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578 등록무효(특)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재형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환희

변 론 종 결 2026. 3. 18.

판 결 선 고 2026.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5. 9. 24. 2025당180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호증)

- 1) 발명의 명칭: 엘리베이터 점검용 사다리
-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22. 1. 10. / 2024. 1. 24. / 특허 제2630862호
- 3) 청구범위

【청구항 1】 엘리베이터의 벽면에 설치되는 점검용 사다리에 있어서(이하 '전체부'라 한다), 양측 끝단에서 전측으로 제1, 2 고정대가 전측으로 절곡 형성되어 벽면에 고정 설치되는 고정프레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고정프레임의 제1, 2 고정대와 일측이 각각 힌지 결합되고, 타측에는 사다리가 힌지 결합되어 회전하는 제1, 2 이격프레임;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고정프레임의 제1, 2 고정대 상단에는 걸림홈이 오목하게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중도부에는 상하로 장형으로 되는 힌지공이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제1, 2 이격프레임의 끝단에는 상기 고정프레임의 힌지공에 결합되는 힌지축이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걸림홈에 걸리는 형태의 걸림돌기가 힌지축과 이격되어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고정프레임의 힌지공은 상측이 하측보다 제1, 2 이격프레임 측으로 더 가깝게 위치하도록 경사지며 형성되어(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사다리를 벽면에 밀착 위치시키거나¹⁾ 이격시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 엘리베이터 점검용 사다리(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5】 (각 기재 생략)

【청구항 6】 (삭제)

4)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엘리베이터 점검용 사다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사다리를 간단한 작동에 의해 벽면에 기대어 두거나 벽면으로부터 이격시킬 수 있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점검용 사다리에 관한 발명이다.

㉡ 배경기술

[0004] 특히 엘리베이터의 수리 및 점검을 위한 사다리는 일반적으로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10)가 승강하는 통로(11)의 하부에 위치한 점검구(12) 내에 고정 설치되며, 엘리베이터(10)의 고장으로 보수를 행할 경우에는 보수자가 출입구(13)를 통하여 사다리(14)를 이용하여 점검구(12)의 내측에서 보수 작업을 행하게 된다.

[0005] 그러나, 엘리베이터와 승강로 벽면 사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사다리를 펼쳐서 설치하기가 어렵고 벽면에 최대한 붙여서 설치하여야 하지만, 벽면에 밀착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오르내리기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0006] 따라서, 대한민국 공개특허 10-2020-0050555호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벽면으로부터 이격시켜 사용할 수 있는 점검용 사다리가 제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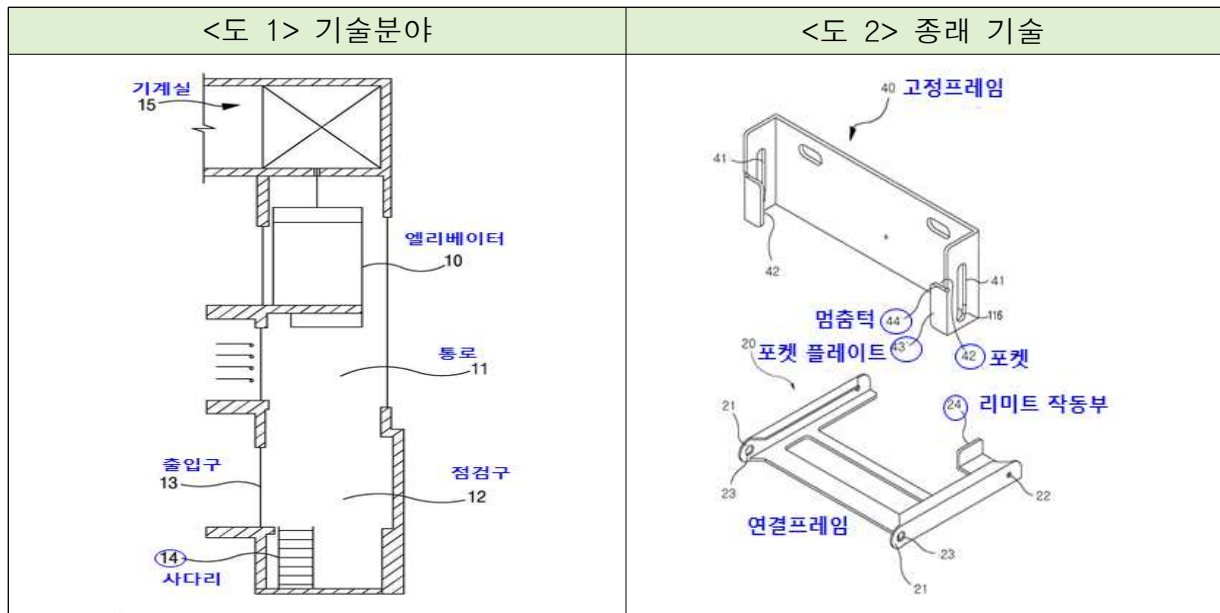
[0011] 그러나, 이러한 종래 기술은 리미트 작동부(22), 그리고 포켓(42)과 포켓플레이트(43) 및 멈춤턱(44)이 구비되어야 하고, 사용을 위해 회전된 연결프레임(30)이 견고하게 지지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0012] 또한, 사다리(30)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다리(30)를 들어올려 연결프레임(20)의 나사가 장공(41)의 상측까지 올려지도록 하여야 하는바, 힘이 없는 사람이나 부녀자는 들어올리

1) 청구범위에 기재된 '위치시키거나'는 '위치시키거나'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기가 쉽지 않아 사용하기에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0013] 또한, 벽면에 밀착시킨 사다리(30)를 고정시켜 주기 위한 고정구가 구비되어 있는바, 이를 위한 구성을 용접 등에 의해 별도로 제작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해결하려는 과제

[0016]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안출된 발명으로서, 누구나 쉽게 점검용 사다리를 벽면으로부터 이격시켜 이용하고, 간단한 작동에 의해 사다리를 벽면에 밀착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다.

[0017] 또한, 본 발명은 적은 힘으로도 누구나 쉽게 사다리를 벽면으로부터 이격시키거나 밀착시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다른 과제가 있다.

[0018] 또한, 본 발명은 벽면에 밀착 위치시킨 사다리가 별도의 장치 없이도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데 다른 과제가 있다.

㉮ 과제를 해결을 위한 발명의 구체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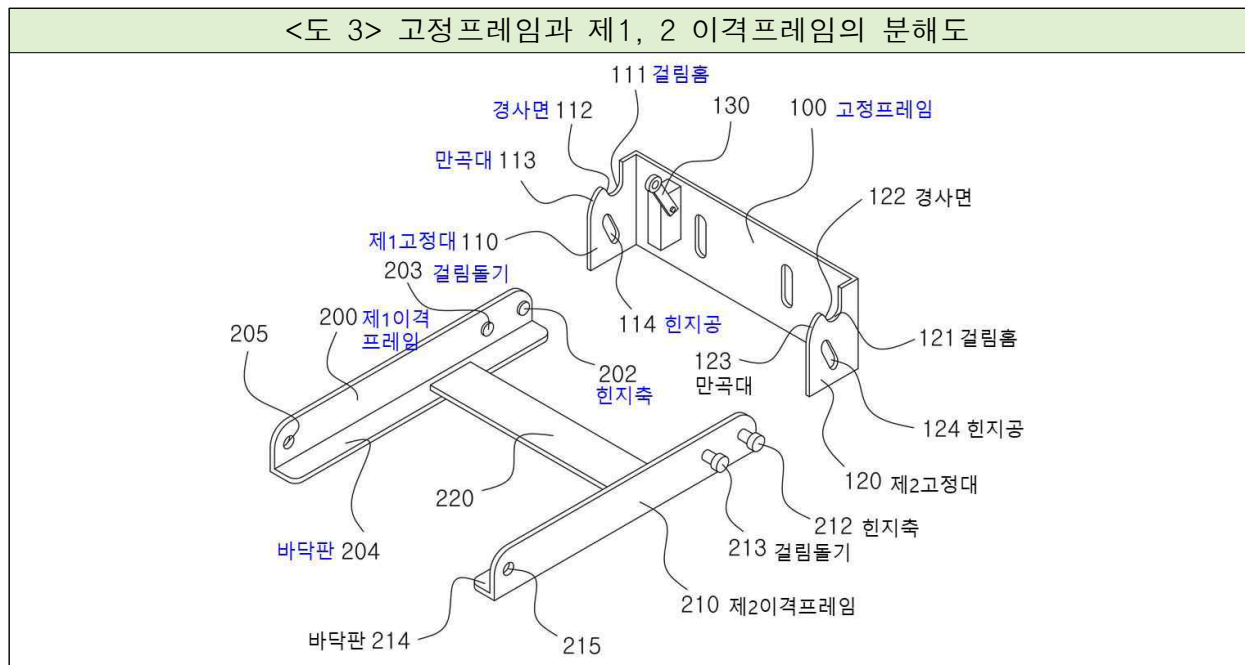
[0037] 본 발명의 점검용 사다리(300)는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벽면에 설치되어 엘리베이터의 수리 및 점검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벽면에 절첩되어 있으며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펼쳐서 사용을 하게 된다.

[0038] 이를 위해 벽면에는 고정프레임(100)이 상하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된 상태로 견고하게 고정 설치되며, 고정프레임(100)의 양측에는 각각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의 일측이

힌지 결합되고,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의 타측에는 사다리(300)가 힌지 결합된다.

[0039] 고정프레임(100)은 양측 끝단이 전측 방향으로 절곡되어 제1, 2 고정대(110)(120)가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ㄷ'자 형태로 형성된다. 그리고, 제1, 2 고정대(110)(120)의 상단에는 소정의 깊이로 걸림홈(111)(121)이 오목하게 형성된다. 이때, 걸림홈(111)(121)은 상측 부분이 더 벌어지도록 하되, 전측방향으로 경사면(112)(122)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제1, 2 고정대(110)(120)의 전측에는 만곡대(113)(123)가 완만하게 만곡 형성되어 경사면(112)(122)과 연결된다.

[0040] 또한, 제1, 2 고정대(110)(120)의 중도부에는 상하로 긴 형태의 장형 힌지공(114)(124)이 관통 형성된다. 특히, 장형 힌지공(114)(124)은 수직보다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관통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측이 하측보다 제1, 2 이격프레임(200)(210) 측으로 더 가깝게 위치하도록 경사지게 기울어져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42]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은 일측 끝단에는 각각 고정프레임(100)의 제1, 2 고정대(110)(120)에 힌지 결합되며, 이를 위해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에는 힌지축(202)(212)이 돌출 형성되어, 각각 고정프레임(100)의 힌지공(114)(124)에 끼워져 결합된다.

[0043] 또한, 힌지축(202)(212)과 이격되어 걸림돌기(203)(213)가 돌출 형성되며, 양측의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의 하측에는 바닥판(204)(214)이 각각 수평 상태로 절곡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의 사이에는 작동스위치(130)를 작동시킬

수 있는 지지대(220)가 더 연결될 수 있다.

[0044]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의 타측에는 사다리(300)가 힌지(205)(215) 결합된다.

[0045]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은 승강로 벽면에 고정프레임(100)이 고정되고, 고정프레임(100)과 힌지 결합된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에 의해 사다리(300)가 결합된다.

[0046]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평상시에는 사다리(300)가 승강로 벽면에 밀착하여 위치하게 되며, 비상 시 또는 수리 등을 위해 사다리(300)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정프레임(100)으로부터 사다리(300)를 잡아당겨 승강로 벽면으로부터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의 간격만큼 이격시켜 사용한다.

[0047] 즉, 사다리(300)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당기게 되면,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의 걸림돌기(203)(213)가 제1, 2 고정대(110)(120)의 걸림홈(111)(121)에서 경사면(112)(122)을 타고 슬라이딩하여 상승하게 되며,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이 힌지축(202)(212)을 축으로 하여 회전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이 수평 상태가 되도록 회전하게 된다. 즉, 적은 힘으로도 걸림돌기(203)(213)가 걸림홈(111)(121)으로부터 빠지게 되어 쉽게 이격시킬 수 있게 된다.

[0048] 따라서, 사다리(300)는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의 간격만큼 고정프레임(100)으로부터 이격된 후 수직 상태가 되면서 지면과 접하며 지지된다. 그리고, 바닥판(204)(214)의 끝단이 고정프레임(100)과 접하면서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이 더 이상 회전하지 못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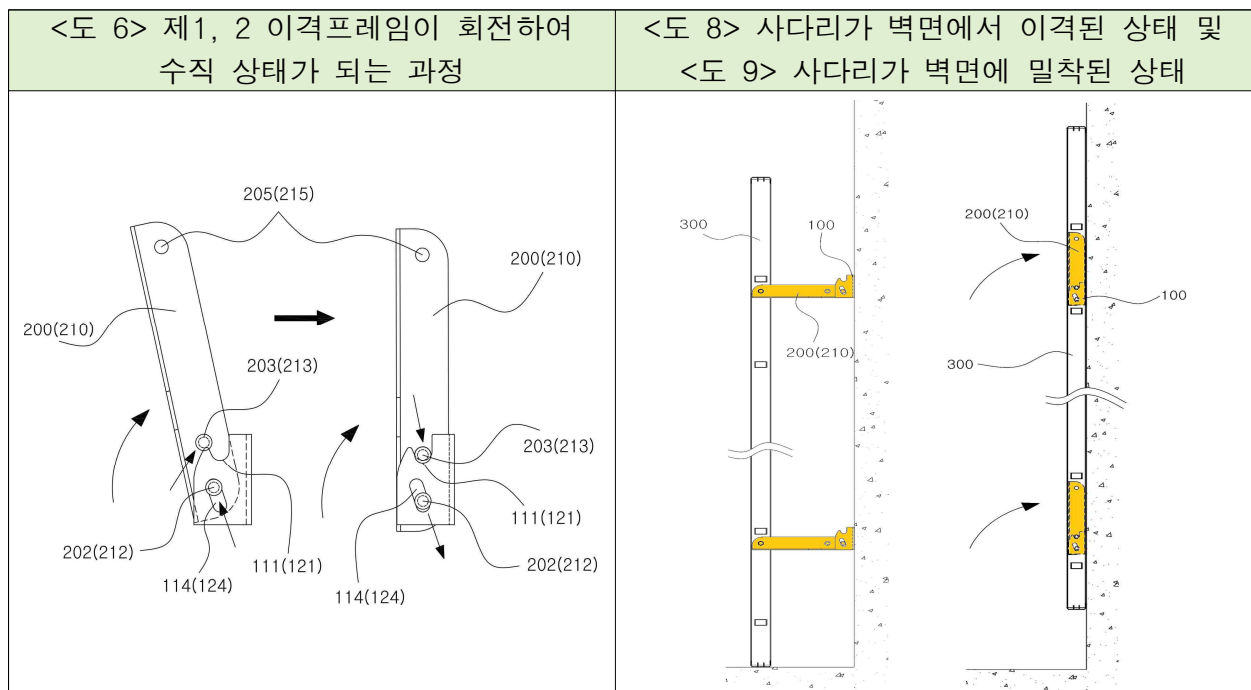
[0050] 또한, 사다리(300)의 이용을 완료한 후에는 사다리(300)를 잡고 살짝 들어 올리면서 밀게 되면, 사다리(300)와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의 사이가 힌지(205)(215)를 축으로 회전하며 절첩이 되고,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의 힌지축(202)(212)도 고정프레임(100)의 힌지공(114)(124)에 끼워진 상태로 회전하면서 절첩이 되게 된다.

[0051] 더욱 자세하게는, 사다리(300)를 미는 힘에 의해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의 걸림돌기(203)(213)가 제1, 2 고정대(110)(120)의 완만한 만곡대(113)(123)를 타고 상승 이동하게 되고, 최상부를 지나면 자중에 의해 하강하면서 걸림홈(111)(121) 속으로 삽입되어 걸린 상태로 고정되게 된다. 따라서,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이 수직 상태로 고정되게 되고, 사다리(300)도 제1, 2 이격프레임(200)(210)과 중첩되어 수직 상태로 위치하게 된다.

[0052] 한편, 제1, 2 이격프레임(200)(210)의 힌지축(202)(212)이 고정프레임(100)의 상하 장형의 힌지공(114)(124) 속에서 상측방향으로 상승 이동한 후, 걸림돌기(203)(213)가 걸림홈

(111)(121)에 걸려 하강이 멈춘 상태가 되면, 힌지축(202)(212)이 힌지공(114)(124)의 최하단부까지 하강하지 않고, 소정의 간격을 두고 중도부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사다리(300)의 자중에 의해 걸림돌기(203)(213)가 걸림홈(111)(121)의 하단부에 밀착되어 접하게 되고, 걸림돌기(203)(213)가 걸림홈(111)(121)으로부터 저절로 상승하여 빠지는 등의 염려가 없게 된다.

[0053] 이렇게 고정프레임(100) 측으로 밀착되어 위치하는 사다리(300)는 전면 또는 하측방향으로 강제적으로 당기게 되어도, 걸림돌기(203)(213)가 걸림홈(111)(121)에 걸린 상태이므로 쉽게 빠지지 않고, 들어올리는 힘이 작용하여야만 사다리(300)를 고정프레임(100)으로부터 이격시킬 수 있게 된다.



나. 선행발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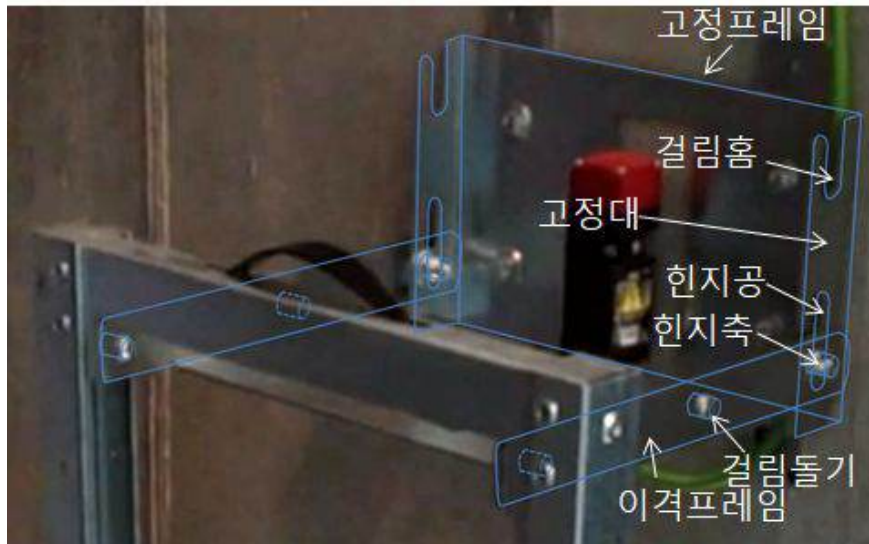
1) 선행발명 12)(을 제1~2호증)

선행발명 1은 2019. 1. 24. E에 게시된 동영상³⁾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F사의 '납작 사다리(FLAT LADDER)'로서, 그 주요 구성은 아래 사진과 같다.

2)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의 비교대상발명 1과 같다.

3) https://www.E.com/watch?v=bbA1yclr_Rw

<선행발명 1의 프레임 사진>



2) 선행발명 24)(을 제6호증)

선행발명 2는 2021. 3. 17. G 카페에 게시된 '피트사다리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⁵⁾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엘리베이터 점검용 사다리 제품인바, 그 주요 구성은 아래 각 사진과 같다.

<선행발명 2의 프레임 사진>



<이격되는 중의 상태>

<이격된 상태>

4)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의 비교대상발명 2와 같다.

5) <https://cafe.G.com/rltn3929/21205>



3) 선행발명 36)(을 제4, 5호증)

선행발명 3은 2019. 3. 3. E에 게시된 동영상⁷⁾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H사의 피트⁸⁾ 사다리(H escada de poco)인바, 그 주요 구성은 아래 사진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6)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의 비교대상발명 3과 같다.

7) <https://www.E.com/shorts/JKAyFa-aySE>

8) 승강기가 운행되는 최하층 승강장 하부에 있는 승강로 부분을 의미한다.

1) 피고는 2025. 6. 21.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 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2025당1806호로 심리한 후, 2025. 9. 24.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3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3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3과 선행발명 2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선행발명 1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볼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간단한 작동에 의해 사다리를 벽면에 밀착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은 힘으로도 쉽게 사다리를 벽면으로부터 이격시키거나 밀착시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벽면에 밀착 위치시킨 사다리가 별도의 장치 없이도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하고 있는데, 선행발명 1은 이러한 기술적 과제나 작용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오목하게' 형성된 걸림홈과 상부가 제1, 2 이격프레임쪽으로 가깝게 경사진 힌지공을 결합함으로써, 걸림돌기가 경사면을 따라 슬라이딩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걸림이 해제되게 하여, 작업자의 동작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사다리를 펼치거나 접을 수 있게 한다. 이에 비하여 선행발명 1은 그 걸림홈이 고정대의 최상단에 수직방향으로 길게 형성되고 힌지공도 수직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어서, 사다리를 수직 방향으로 들어올린 후 인위적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낙하시키는 방식으로 동작하고, 이에 따라 걸림돌기의 궤적(이동거리)이 증가되며 작업자의 동작도 커지게 된다.

2) 선행발명 3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발명의 구성 및 효과 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볼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걸림홈이 고정대 상단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3의 걸림홈은 고정대의 전방 측면에 형성되는 차이점이 있다. 위 차이점으로 인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우 작업자가 사다리를 올려서 편하게 접을 수 있고 고정시킬 수 있는 반면, 선행발명 3의 경우 작업자가 걸림돌기를 걸림홈에 수평 방향으로 정확히 밀어 넣어야 사다리가 접히고 견고하게 고정된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힌지공 상부가 제1, 2 이격프레임쪽으로 가깝게 경사

진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보다 적은 힘으로도 작동 가능한 반면, 선행발명 3은 이와 반대로 힌지공 상부가 벽쪽으로 가깝게 경사진 형태라는 차이점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선행발명들에 의해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된다.

1) 모멘트 평형, 마찰력, 힘평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사진 힌지공은 선행발명 1, 3의 수직으로 형성된 힌지공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힘이 필요한바, 그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주지관용기술의 단순 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3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① 선행발명 3이나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인 경사진 힌지공을 결합함으로써 또는 ② 선행발명 3이나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경사진 힌지공을 결합함으로써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선행발명 3과 선행발명 2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1) 관련 법리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

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후101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3의 구성 대비

구성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3
전제부	엘리베이터의 벽면에 설치되는 점검용 사다리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점검용 피트 사다리'에 관한 것
1	양측 끝단에서 전측으로 제1, 2 고정대가 전측으로 절곡 형성되어 벽면에 고정 설치되는 고정프레임;	고정프레임은 벽면에 고정되고, 고정대는 고정프레임의 양측 끝단을 전면 방향으로 절곡하여 형성된 것
2	상기 고정프레임의 제1, 2 고정대와 일측이 각각 힌지 결합되고, 타측에는 사다리가 힌지 결합되어 회전하는 제1, 2 이격프레임;을 포함하며,	이격프레임은 고정프레임과 사다리를 연결하고, 고정프레임, 이격프레임 및 사다리 등은 모두 힌지 결합되어 자유로이 회전이 가능한 것
3	상기 고정프레임의 제1, 2 고정대 <u>상단</u> 에는 걸림홈이 오목하게 형성되고,	고정대의 <u>측면</u> 에는 걸림홈이 형성되는 것
4	중도부에는 상하로 장형으로 되는 힌지공이 형성되며,	고정대의 걸림홈 아래쪽에 상하로 장형으로 되는 힌지공이 형성됨
5	상기 제1, 2 이격프레임의 끝단에는 상기 고정프레임의 힌지공에 결합되는 힌지축이 형성되고,	장형으로 형성된 힌지공에 힌지축이 결합된 것
6	상기 걸림홈에 걸리는 형태의 걸림돌기가 힌지축과 이격되어 형성되고,	걸림돌기가 힌지축으로부터 소정 간격 이격되어 형성된 것
7	상기 고정프레임의 힌지공은 상측이 하측보다 제1, 2 이격프레임 측으로 더 가깝게 위치하도록 경사지며 형성되어,	힌지공은 <u>벽면을 향해 올라가도록 경사지게</u> ⁹⁾ 형성된 것
8	사다리를 벽면에 밀착 위치시키거나 이격시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벽면에 밀착되어 접혀지거나 벽면에서 이격된 것
대상	엘리베이터 점검용 사다리.	엘리베이터 점검용 피트 사다리

9) 원고는 선행발명 3의 힌지공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힌지공 경사방향과는 반대방향(힌지공 상부가 하부보다 벽면 쪽으로 더 가깝게 경사진 방향)으로 경사져 있다고 주장하고(2026. 1. 27. 자 준비서면), 피고는 선행발명 3

3) 공통점 및 차이점

가) 전제부 및 구성요소 1, 2, 4, 5, 6, 8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 및 구성요소 1, 2, 4, 5, 6, 8은 선행발명 3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3

(1)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걸림홈(구성요소 3)은 오목하게 형성되는데, 오목하다는 용어는 '가운데가 둥글게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¹⁰⁾, 세로로 길게 형성된 선행발명 3의 걸림홈과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오목하게' 용어의 기술적 의미가 발명의 설명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들고 있는 국어사전에서도 '오목하게'의 구체적 형태, 즉 가운데 둥글게 들어가 있는 부분의 깊이나 모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발명의 설명에서 "이때 걸림홈(111)(121)은 상측 부분이 더 벌어지도록 하되, 전측방향으로 경사면(112)(122)이 형성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걸림홈에 대해 위와 같이 한정하는 문구가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에서만 "상기 고정프레임의 걸림홈은 상측이 더 벌어지도록 경사면이 형성되고"라는 구성이 추가되어 있는 점(갑 제1호증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오목하게'라는 용어나 명세서의 도면(앞서 본 <도 3>, <도 6>)에 도시되어 있는 걸림홈 형상만을 근거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이 "상측이 더 벌어지도록 경사면이 형성된" 걸림홈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 힌지공이 수직방향에 가깝다고 주장한다(2026. 1. 5. 자 답변서). 선행발명 3의 힌지공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살펴보면, 선행발명 3의 힌지공은 그 상부가 하부보다 벽면 쪽으로 더 가깝도록 경사진 형태로 보인다.

10)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한국어-영어 학습사전

선행발명 3의 대응구성요소인 걸림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게 오목하게 형성된 것으로서 그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다만, 선행발명 3의 걸림홈은 고정대의 전방 측면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걸림홈은 고정대의 상단에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다) 구성요소 7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7은 "고정프레임의 힌지공은 상측이 하측보다 제1, 2 이격프레임 측으로 더 가깝게 위치하도록 경사지며 형성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3의 대응구성요소는 "고정프레임의 힌지공은 벽면을 향해 올라가도록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 경사진 방향이 상이하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4) 차이점 1, 2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걸림홈과 선행발명 3의 걸림홈은 모두 이격프레임의 걸림돌기를 안착시킴으로써 사다리를 벽면에 밀착시키고 벽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걸림홈이 형성된 위치가 고정대의 상단인지, 전방 측면인지에 따라 그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원고는 '차이점 1로 인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우 작업자가 사다리를 위로 올려서 편하게 접어 고정시킬 수 있는 반면, 선행발명 3의 경우 작업자가 걸림돌기를 걸림홈에 수평 방향으로 정확히 밀어 넣어야 사다리가 접히고 견고하게 고정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우에도 사다리를 위쪽으로 올리는 힘만이 아니라 수평방향으로 미치는 힘까지 동시에 가해야만 걸림돌기가 걸림홈에 안착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위

주장과 같은 정도로 효과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차이점 1은 단순한 형상 변경으로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차이점 2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힌지공(구성요소 7)을 그 상측이 하측보다 더 제1, 2 이격프레임 쪽으로 가깝게 위치하도록 경사지게 형성한 것은, 사다리를 수직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경사진 힌지공을 따라 비스듬하게 끌어올릴 때 보다 적은 힘이 든다는 효과에 착안하여 사다리를 벽면으로부터 이격시키거나 벽면에 밀착시키는 동작을 적은 힘으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선행발명 3의 힌지공은 그 상부가 하부보다 더 벽면과 가깝도록 경사진 형태이므로 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다리를 접기 위해 위로 끌어올릴 때 힌지축의 이동 방향이 그와 반대 방향으로 경사진 힌지공 때문에 제약을 받는 구조여서 더 많은 힘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과 관련하여, ① 앞에서 본 선행발명 2에는 상부가 하부보다 더 제1, 2 이격프레임에 가깝도록 경사지게 형성된 힌지공이 개시되어 있는 점, ② 선행발명 3과 선행발명 2는 모두 엘리베이터 점검용 접이식 사다리에 관한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할 뿐만 아니라, 모두 장형 힌지공 내에서 힌지축이 회전하거나 상하로 이동하여 사다리의 접힘과 펼침 동작을 보조하도록 하는 구조에 관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호간 기술을 참조할 수 있는 동기가 있는 점, ③ 선행발명 3의 힌지공 경사방향을 선행발명 2에 개시된 것과 같게 변경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앞서 본 선행발명 1 내지 3의 각 기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특허 출원 이전부터 위 기술분야에서 고정대의 장형 힌지공에 관하여 그 기울기 방향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가 시도되고 있었던 점, ⑤ 위 힌지공의 형상이나 기울기 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의 차이는 그 구조 자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특히 차이점 2로 인해 선행발명 3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작업자가 사다리를 접기 위해 들어올릴 때 힌지축의 이동 방향이 그와 반대 방향으로 경사진 힌지공 때문에 제약을 받는 구조인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힌지공의 기울기 방향 변경을 시도할 동기도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술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2의 힌지공 경사방향을 선행발명 3에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위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이상의 이유로 진보성 부정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진보성 부정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 중간결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소영

판사 박은희

판사 권원명